

옥외광고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설치·부착된 광고물로서 앞으로 근절되어야 하는 불법 옥외광고물

현수막

옥외광고물법령상 현수막은 종이 또는 천 등으로 만드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은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찢어질 경우에는 차량 통행이나 보행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벽보

불법벽보는 거리환경을 대단히 지저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광고등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표적인 불법광고물입니다. 규격이 적은 스티커 등의 불법광고물은 거리의 가로등주, 건물벽면, 공중 화장실 등 곳곳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떼어내더라도 지저분한 자국이 남아서 거리환경을 저해하게 됩니다.



입간판

낮에는 사라지고 밤에는 보도상으로 튀어나오는 불법 입간판은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 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지장을 주고 조명광고까지 하면서 어린이들의 감전사고도 종종 있다고 하니 특별히 근절되어야 하는 불법광고물입니다.



애드벌룬

애드벌룬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은 도심의 흉물로 변모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규격이 점점 커지고 도안도 점점 원색으로 짙어져 가고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광고물입니다.



벽면이용간판

벽면이용간판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3층까지만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판으로 뒤덮힌 건물은 보기에다 안좋을 뿐 아니라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조명광고물의 경우에는 야간의 빛공해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옥상간판

안전점검을 하지않은 노후화된 옥상간판은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에 의한 추락등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출간판

돌출간판 하단의 높이는 최소 3m이상이어야 하는데 낮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머리에 부딪히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합니다.



지주이용간판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지역특산물광고와 공공목적 광고는 일반 상품광고와 동일한 옥외광고관련법령을 적용 받아야 합니다.
언론기관의 채널홍보판에도 상업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차량 뒷유리의 불법광고는 뒤따르는 차량운전자의 시야 방해와 더불어 당해 차량운전자의 후면시야도 방해가 되어 큰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더구나 차량위에 광고탑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됩니다.

